

 <b>국토교통부</b>	<h1>보도자료</h1>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b>보다나은 정부</b>
	<b>배포일시</b>	<b>2019. 7. 3.(화)</b> <b>총 4매(본문2)</b>	
<b>담당 부서</b>	물류산업과	<b>담당자</b>	• 과장 김완국, 사무관 이양구, 주무관 임태정 • ☎ (044) 201-4018, 4019
<b>보도일시</b>		2019년 7월 3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3.(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 국토부, 안전운임 심의·의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첫발...화주사업자차주 대표위원 총 13명 위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0월 31일 공포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3일(수)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치권과 화물업계 간의 합의\*를 거쳐 마련, 지난해 4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 \* 48회의 이해관계자 회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8.4)
-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의 운임으로 구분된다.
  -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19.6)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으로 4명의 공익대표위원과 화물운송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을 위촉하였으며,

- 공익 대표위원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전문가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은 각 업계별 대표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다.
- 이날 Kick-off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 앞으로 안전운임위원회는 실무급 논의체인 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위원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도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안전운임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 044-201-40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위 원	성 명	현 소속 / 직위
공익 대표위원 (4명)	하헌구	이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안승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윤영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
	한상용	동서대 국제통상물류학부 부교수
화주 대표위원 (3명)	서덕호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
	허덕진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
	김재하	시멘트협회 상무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명)	신한춘	일반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장진곤	주선연합회 회장
	정기홍	한국통합물류협회 종합물류위원장
화물차주 대표위원 (3명)	김종인	화물연대 미래전략위원장
	심동진	화물연대 전략조직사업국장
	천춘배	화물연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 참고2

## 안전운임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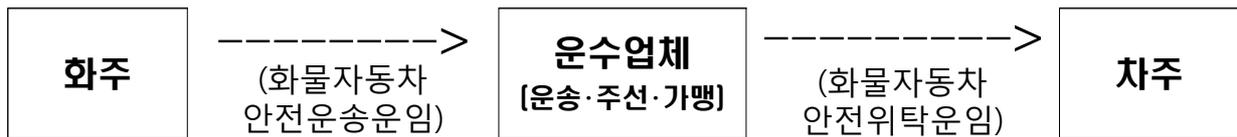
- (제도유형) ① 강제성(처벌조항)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② 강제성 없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병행 도입

< 안전운임·안전운송원가 비교 >

구 분	안전운임 (구 표준운임)	안전운송원가 (구 참고원가)
성 격	강제성 있는 최저운임	운임 결정 시 참고자료
적용대상	안전운송운임 : 화주→운수업체 안전위탁운임 : 운수업체→차주	화물운송시장 전체
적용기간	'20.1.1~'22.12.31(3년간)	지속 적용
강제성	위반 시 화주와 운송사 등 처벌	없음(자율적용)
도입품목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철강, 일반형화물차 운송품목

### ※ 안전운임 유형

- 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화주→운수업체)  
 ②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운수업체→차주)



### □ 결정 절차

- ① (원가산정) 정부가 원가산정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원가를 산정한 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 제시  
 ② (운임고시) 국토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운임 및 원가를 시행 전년도 10월말까지 고시

- (실효성 확보) ① 안전운임 위반 지급시 500만원 과태료, ②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효율적인 적발 및 단속을 위해 '안전운임 신고센터' 설치·운영(교통안전공단)